

[] 측정기기
[] 폐수배출시설 개선계획서
[] 수질오염방지시설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허가(신고)번호	제	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4일(검사기간 제외)
----------	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---

사업자	사업장명				
	대표자				
	주 소 (전화번호:)				
사업장	소재지 (전화번호:)				
	사업종류			주생산물	
개선계획	측정기기 · 폐수배출시설 ·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(예정)일				
	개선계획서 제출사유				
	개선완료 · 가동중단 · 위탁처리(예정)일			개선(가동중단 · 위탁)기간	
	부적정 운영명세	측정기기 및 시설명			
		규격		수량	
	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	항목			
		농도			
	폐수위탁처리	위탁처리방법			
		위탁업체명		위탁처리량 m³/일	
예상평균 폐수배출량 m³/일			일일 가동 예상시간		

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· 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세부 개선명세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	--------

작성요령

1. 폐수배출시설·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를 개선·변경 또는 보수하거나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부 개선명세서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2. 공법 등의 개선으로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부 개선명세서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